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0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호 및 제6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법정필수경비 및 필수 추진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 편성을 위한 예산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요청함.

3. 주요내용

가. 202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964,992,163	876,183,282	88,808,881	10.14
일반회계	928,450,831	842,036,221	86,414,610	10.26
특별회계	36,541,332	34,147,061	2,394,271	7.01
의료급여	680,864	519,570	161,294	31.04
주 차 장	32,922,629	31,183,155	1,739,474	5.58
건축안전	2,937,839	2,444,336	493,503	20.19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86,414,610천원

1)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928,450,831	842,036,221	86,414,610	
지방세 수입	205,442,059	205,442,059	0	
보통세	204,745,905	204,745,905	0	
지난년도 수입	696,154	696,154	0	
세외수입	73,790,619	75,007,129	△1,216,510	
경 상 적 세외수입	63,946,327	65,162,837	△1,216,510	○ 제1,2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1,216,510
임 시 적 세외수입	4,522,304	4,522,304	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5,321,988	5,321,988	0	
지방교부세	19,403,000	19,403,000	0	
조정교부금 등	93,145,074	93,145,074	0	
자 치 구 조정교부금	93,145,074	93,145,074	0	
보 조 금	413,862,156	407,347,178	6,514,978	
국고 보조금	229,752,149	224,735,264	5,016,885	
시비 보조금	184,110,007	182,611,914	1,498,09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807,923	41,691,781	81,116,142	
보전수입 등	122,807,923	41,691,781	81,116,142	○ 순세계잉여금: 69,128,232 ○ '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11,987,910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86,414,610천원

● 정책사업비 ----- 14,158,998천원

▶ 경상사업: 4,758,792천원

▶ 보조사업: 7,223,854천원

▶ 투자사업: 2,176,352천원

※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영등포지역 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일자리경제과)	447,720 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일자리경제과)	2,000,000 천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미래교육과)	40,800 천원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복지정책과)	45,900 천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복지정책과)	3,453,257 천원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보육지원과)	360,000 천원
양평1동 어린이집 정밀안전 진단실시(보육지원과)	23,000 천원
아동급식 지원(아동청소년 복지과)	206,280 천원
기초연금 지급(어르신복지과)	2,005,364 천원
구립 당산1가 경로당 승강기 교체(어르신복지과)	64,200 천원
자원순환센터 탁구장 보수(청소과)	46,360 천원
녹지관리초소 통합운영(푸른도시과)	500,000 천원
빗물관리시설 확충(푸른도시과)	460,000 천원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용역(치수과)	1,500,000 천원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설치(치수과)	366,000 천원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치수과)	300,000 천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도로 바닥신호등 설치(교통행정과)	137,000 천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문화체육과)	50,000 천원
종목별 협회(연맹)장기 대회(문화체육과)	44,500 천원

인조잔디 축구장 그늘막 설치(문화체육과)	35,000 천원
선별진료소 운영(보건지원과)	617,432 천원
역학조사 인력지원(보건지원과)	616,512 천원
재택치료 전담반 운영(보건지원과)	116,670 천원
일반 예비비(기획예산과)	1,980,791 천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기획예산과)	51,000,000 천원

● '21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6,728,151천원

● 예비비 ----- 52,980,791천원

▶ 일반예비비: 1,980,791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000,000천원

● 행정운영경비----- 546,670천원

▶ 인건비: 546,670천원

● 기금전출금 ----- 2,000,000천원

나. 특별회계 ----- 2,394,271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161,294천원

● 세입

▶ 국시비 보조금: 21,000천원

▶ 순세계 잉여금: 134,628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5,666천원

● 세출

▶ 인력운영비: 21,000천원

▶ 보조금 반환금: 140,294천원

☐ 주차장 특별회계 ----- 1,739,474천원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1,669,486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69,988천원

● 세출

▶ 보조금 반환금: 71,417천원

▶ 예탁금: 1,668,057천원

☐ 건축안전 특별회계 ----- 493,503천원

● 세입

▶ 순세계 잉여금: 442,457천원

▶ 보조금 사용잔액: 51,046천원

● 세출

▶ 보조금 반환금: 54,136천원

▶ 건축물 안전점검: 439,367천원

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최종예산	기정액	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률[%]
총 계		360,573,023	299,948,892	60,624,131	20.21
감사담당관		334,038	334,038	0	0.00
기 획 재정국	기 획 예 산 과	64,482,446	11,501,655	52,980,791	460.64
	일 자리 경제 과	38,352,765	36,118,055	2,234,710	6.19
	재 무 과	747,206	747,206	0	0.00

	징 수 과	881,899	881,899	0	0.00
	부 과 과	1,279,759	1,275,211	4,548	0.36
미래비전 추진단	비전협력과	1,083,082	1,070,404	12,678	1.18
	미래교육과	34,720,140	34,357,452	362,688	1.06
	사회적경제과	3,745,700	3,566,177	179,523	5.03
행 정 지원국	총 무 과	120,737,141	119,940,851	796,290	0.66
	홍보미디어과	5,581,552	5,551,700	29,852	0.54
	자치행정과	16,160,802	15,726,672	434,130	2.76
	문화체육과	25,643,427	26,067,338	△423,911	△1.63
	민원여권과	1,306,467	1,210,702	95,765	7.91
보건소	보건지원과	18,696,596	16,743,575	1,953,021	11.66
	건강증진과	24,172,571	22,379,058	1,793,513	8.01
	의약과	1,576,848	1,409,124	167,724	11.90
	위생과	1,070,584	1,067,775	2,809	0.26

라.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일반회계)

【감사담당관】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334,038	334,038	0	변동사항 없음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105,744,075	50,524,026	55,220,049	109.29% 증
기 획 예 산 과	64,482,446	11,501,655	52,980,791	◦ 예비비 52,980,791
일 자 리 경 제 과	38,352,765	36,118,055	2,234,710	◦ 공공근로 △407,190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37,150 ◦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997,000 ◦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추경) 447,720 ◦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24,640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52,176 ◦ 국고보조금 반환금 509,716 ◦ 시비보조금 반환금 816,778 ◦ 기금 전출금 2,000,000
재 무 과	747,206	747,206	0	변동사항 없음
징 수 과	881,899	881,899	0	변동사항 없음
부 과 과	1,279,759	1,275,211	4,548	◦ 국고보조금 반환금 4,548

【미래비전추진단】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39,548,922	38,994,033	554,889	1.42% 증
비 전 협 력 과	1,083,082	1,070,404	12,678	◦ 시비보조금 반환금 12,678
미 래 교 육 과	34,720,140	34,357,452	362,688	◦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40,8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1,681 ◦ 시비보조금 반환금 320,207

사 회 적 경 제 과	3,745,700	3,566,177	179,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반환금 35,375 ◦ 시비보조금 반환금 144,148
----------------	-----------	-----------	---------	---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169,429,389	168,497,263	932,126	0.55% 증
총 무 과	120,737,141	119,940,851	796,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협력 지원 7,608 ◦ 인력운영비 773,316 ◦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89 ◦ 시비보조금 반환금 2,277
홍 보 미디어과	5,581,552	5,551,700	29,8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1,060 ◦ 시비보조금 반환금 8,792
자 치 행 정 과	16,160,802	15,726,672	434,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30,000 ◦ 동청사 시설보수 77,000 ◦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28,932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51,062 ◦ 국고보조금 반환금 3,069 ◦ 시비보조금 반환금 346,191
문 화 체 육 과	25,643,427	26,067,338	△423,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26,509 ◦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90,000 ◦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조성 75,000 ◦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50,000 ◦ 종목별 협회(연맹)장기 대회 44,500 ◦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109,000 ◦ 체육시설 위탁운영 △444,162 ◦ 체육시설 환경개선 △341,0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38,359 ◦ 시비보조금 반환금 145,883
민 원 여 권 과	1,306,467	1,210,702	95,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 운영 및 전산화 사업 95,765

【보 건 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45,516,599	41,599,532	3,917,067	9.42% 증
보 건 지 원 과	18,696,596	16,743,575	1,953,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9,965 ◦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617,432 ◦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11,400 ◦ 역학조사 인력지원 616,512 ◦ 재택치료 전담반 운영 116,670 ◦ 인력운영비 359,155 ◦ 국고보조금 반환금 73,645 ◦ 시비보조금 반환금 171,042
건 강 증 진 과	24,172,571	22,379,058	1,793,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9,644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512 ◦ 청소년 임신부 의료비 지원 26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32,134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1,557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04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76,000 ◦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96,559 ◦ 국가예방접종 실시 36,558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20,042 ◦ 모바일 헬스케어 30,730 ◦ 의료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43,400 ◦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6,000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5,000 ◦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31,964 ◦ 국고보조금 반환금 1,038,841 ◦ 시비보조금 반환금 512,734

의 약 과	1,576,848	1,409,124	167,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18,800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9,893 ◦ 국고보조금 반환금 18,653 ◦ 시비보조금 반환금 40,164
위 생 과	1,070,584	1,067,775	2,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반환금 1,372 ◦ 시비보조금 반환금 1,437

5. 검토의견

가.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999억 4,900만원에서 606억 2,400만원이 증액된 3,605억 7,300만원으로 증감률은 20.2%임.

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 기획재정국

-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5억 2,400만원 대비 552억 2,000만원이 증액(109.3%)된 1,057억 4,400만원으로, 재해·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증액 편성되고, 공공근로 인건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529억 8,100만원이 증액(460.6%)된 644억 8,200만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10억, 일반 예비비 19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2021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691억이 증액되는 등 세입증가 사유로 기인함.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3,500만원이 증액(6.2%)된 383억 5,300만원으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확정내시액 변경(시:구=60:10→시:구=85:15)으로 인해 시비 1억 700만원 증액되면서 구비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용자를 확대하기 위해 20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2,500만원 감액되었음.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사업은 국·시비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억 9,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배분 확정으로 2차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됨에 따라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추경)사업**이 4억 4,800만원 증액 편성됨.

- **부과과**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0.4%)된 12억 8,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임.

(2) 미래비전추진단

-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9억 9,400만원 대비 5억 5,500만원이 증액(1.4%)된 395억 4,900만원으로,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각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임.
- **비전협력과**는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1.2%)된 10억 8,3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된 것에 따름.

-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300만원이 증액(1.1%)된 347억 2,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저소득층의 원어민 화상 영어 지원 확대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로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4,100만원, 창의예술교육센터 및 도서관 운영 등과 관련한 국고 보조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임.
-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액(5.0%)된 37억 4,6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 및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 등과 관련한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임.

(3)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4억 9,700만원 대비 9억 3,200만원 증액(0.6%)된 1,694억 2,900만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연맹)장기 대회 개최 및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영등포 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와 체육시설 환경 개선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임.
-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600만원 증액(0.7%)된 1,207억 3,7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제9대 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경비** 800만원, 지방의회 인사독립에 따른 구청 파견 의회직원의 인건비 6억 900만원 및 직급보조비 인상(「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급별 1만원 인상)으로 1억 6,300만원 등 **인력 운영비** 7억 7,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임.

- **홍보미디어과**는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0.5%)된 55억 8,2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보 메시지와 각종 생활문자 수요증가에 따른 **문자알림서비스 사용료** 2,100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이 편성된 것에 기인함.
-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400만원이 증액(2.8%)된 161억 6,1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족분과 BF등 인증 수수료 3,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신청을 통한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 7,700만원,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시스템 구축** 관련 지자체 균등분담금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사업의 당초예산에서 구비로 편성한 사업비 일부를 시비로 재원 변경함에 따라 구비 5,100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함.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원이 감액(1.6%)된 256억 4,300만원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신길동 기부채납 공간에 초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는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7,500만원 반영에 따른 구비 7,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연맹)장기 대회 지원** 9,400만원, 단순 체험형인 가상현실 체험관에서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향상을 하기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사업**은 시비 9,000만원 반영에 따른 구비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억 9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4월부터 정상 운영한 영등포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4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 양평누리 체육공원 축구장 그늘막 설치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빗·공해 및 야간 경기장 소음 등의 발생 등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안양천 갈대2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3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대비 9,600만원이 증액(7.9%)된 13억 6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한 것임.

(4) 보건소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6억 대비 39억 1,700만원이 증액(9.4%)된 455억 1,700만원으로, 이는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인력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응급 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임.
-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5,300만원이 증액(11.7%)된 186억 9,7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6억 1,700만원, 역학조사 인력지원 6억 1,700만원, 재택치료 전담반 운영 1억 1,7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500만원 편성된 것에 기인함.
-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9,300만원이 증액(8%)된 241억 7,300만원이 계상된 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3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100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3,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200만원, 저소득 및 비혼모가정에 대한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9,7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모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시비 교부액 증감을 반영한 재원 변경을 위함임.

- **의약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액(11.9%)된 15억 7,7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매칭사업인 2022년 응급 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억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1,000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 대상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변경요구액: 25억 4,300만원
- 변경 사유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전입금 수령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 변경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22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6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5억 4,300만원 증액 변경함에 따라 92억 8,400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 증감액은 25억 4,300만원으로 전입금 20억, 융자금 회수 1억 4,7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800만원을 증액하고 이자 수입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함.
- 지출 증감액은 25억 4,3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회수 1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라. 총 평

○ 종합적인 검토결과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산의 감액 조정,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국·시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변동 등의 사유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임.
-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증감 규모는 606억 2,400만원으로서 이 중 예비비가 529억 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2억 6,000만원, 코로나19 등으로 투입되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감염병 및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재정으로 투입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및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심신이 위축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이처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비율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예산과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필요한지 또는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3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